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552
------------	-----

2019년 4월 22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29일, 정진철 의원 외 9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9년 4월 22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진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 노후경유차 제한, 친환경차 구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규모 나무심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중 상당부분이 자동차임을 감안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전기자동차로 여객자동차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가·강조하여 재정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전기자동차로 여객자동차를 개선하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3조제2항제6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4. 8 ~ 2019. 4. 15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원안동의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전기자동차·전기자동차(이하 “전기·수소차”라 한다)로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서울 전기차 시대”<sup>1)</sup>,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sup>2)</sup>을 선언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수소차 3천대 시대를 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 결과, 2011년 73대를 시작한 전기자동차는 2018년 누적대수 11,580대에 이르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량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sup>3)</sup>이며,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13,600대, 307대를 보급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전환 및 전기택시·전기버스 확대

#### 1) ‘서울 전기차 시대’ 공동선언문 발표

- 일시 : 2017년 9월 24일 / 장소 : 서울광장
- 참여기관 : 서울시, 서울시의회, 환경부,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 우리은행,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주요내용 : 전기차 보급 확대, 모든 주유소 급속충전기 설치, 관련 조례 개정 등

#### 2)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 발표(2018.10.29.)

- 주요내용 : 2021년까지 권역별 총 6개 수소 충전시설을 구축, 2022년까지 수소차 3천대 보급

#### 3)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18.12)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57,289	338	753	780	1,075	2,907	5,914	13,826	31,696
서울	<b>11,580</b>	<b>73</b>	285	330	212	452	455	4,112	5,661

도입4)과 같은 친환경 정책 추진에 힘을 실고 있음

※ 2019년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

구 분	10년(09~18년) 간 보급량	올해 보급 목표량
전기차	11,428대 (승용 9,857, 택시 160, 버스·화물 68, 이륜 1,343)	13,600대
수소차	84대	307대

- 한편, 동 조례에서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5)의 경우에도 서울시는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도입 추진계획”을6) 통해 3,000대의 전기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전기버스 29대를 운영 중에 있고, “친환경 수소버스 시범도입 추진계획”으로7) 7대의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를 도입할 예정임8)

또한 “2019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계획”을 통해 현재 운행 중인 160여대의 전기택시 외에 2019년에 3,000대의 전기택시 도입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전기 및 수소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9)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 보급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4) 서울시 보도자료(2019.2.11.), 서울시, 올해 '전기·수소차 2만 5천대 시대'...11일부터 보조금 접수  
- 전기택시 ('18년 100대→올해 3천대), 전기버스('18년 30대→올해 100대)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및 수용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6) 버스정책과-14662, 2018.5.31.

7) 버스정책과-31050, 2018.11.15.

8) 서울삼성여객에서 수소버스 1대 운영 중임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등으로 개선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sup>10)</sup>에서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책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다만, 관련 법<sup>11)</sup>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해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 후략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자동차 용어가 서로 달라 이를 정리하여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2. 주요골자

- “수소 연료전지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정의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로 수정함(제3조제2항제6호)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52
----------	-----------

제안년월일 : 2019년 4월 22일  
제안자 : 교 통 위 원 장

###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자동차 용어가 서로 달라 이를 정리하여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 2. 주요골자

- 가. “수소 연료전지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정의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로 수정함(제3조제2항제6호)

### 3. 참고사항 : 생략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여객자동차를 개선하는 사업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의원발의안)	수 정 안(전문위원실안)
제3조(재정지원 대상)  ① (생 략)  ②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신 설>	제3조(재정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 한 법률</u> 」에 따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전기자 동차로 여객자동차를 개 선하는 사업	제3조(재정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전 기자동차, 수소전기자 동차로 여객자동차를 개선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여객자동차를 개선하는 사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재정지원 대상)</p> <p>① (생 략)</p> <p>②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5. (생 략)</p> <p>&lt;신 설&gt;</p>	<p>제3조(재정지원 대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5. (현행과 같음)</p> <p>6.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전기자동 차, 수소전기자동차로 여객자동차를 개선하는 사업</p>